

## 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---

충청북도중·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특별장학생의 선정) 중·고등학교의 장은 별지 추천 서식에 의한 특별장학생 후보자중에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학년도 개시 1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.

제8조중 "승계 추천할 수 있다."를 "승계 선정할 수 있다."로 한다.

[별지] 장학생 추천서를 [별지]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